

## 2024년 제2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년인턴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16일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

### 1. 최종합격자 : 3명

| 지원코드 | 채용분야 | 선발인원 | 합격자 응시번호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인턴01 | 행정   | 2명   | 0111, 0115 |
| 인턴02 | 홍보   | 1명   | 0204       |

### 2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

- 제출자료
  -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(별지서식, 서명하여 pdf로 제출)
- 제출방법 : 2024. 8. 19.(월)까지 e-mail 송부
  - \* e-mail 제목은 '(청년인턴) 응시번호\_성명(예: (청년인턴)0101\_홍길동)'으로 기재

| 지원코드 | 접수기관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인턴01 |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| easypeasy7300@korea.kr | 055-268-2531 |
| 인턴02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- 근로계약 예정일 : 2024. 9. 2.(월)
- 결격사유 등 부적격 사유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 취소, 최종합격자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시험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서식</b> | <b>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</b>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###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
| 채용기관           | 기관명  | 채용방법 | 채용직위(직급) |
|                | 채용사유 |      |          |
| 채용대상자<br>(확인인) | 성명   | 주소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 | 생년월일 | 채용 예정일   |

####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|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가족채용        |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  | [ ] 에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              |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에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예외<br>해당 여부 | 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 | [ ] 에 [ ] 아니오            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#### 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